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세부기준

(시행 2025.03.01.)

구분	자동차		자전거등 ①	
	범죄 처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	범죄 처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중징계	0.03%이상 ~ 0.05%미만	정직1월	0.03%이상 ~ 0.05%미만
		0.05%이상 ~ 0.065%미만	정직2월	0.05%이상 ~ 0.065%미만
		0.065%이상 ~ 0.08%미만	정직3월	0.065%이상 ~ 0.08%미만
		0.08%이상	강등	0.08%이상
음주운전②	2회	0.08%미만	해임	0.08%미만
		0.08%이상	파면	0.08%이상
	3회 이상	-	-	0.08%미만 0.08%이상
음주운전 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③	중징계	정직 - 강등	경중징계	감봉 - 정직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포함) ④	중징계	정직 - 해임	경중징계	감봉 - 해임
음주운전 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 - 파면	중징계	정직 - 해임
음주운전 · 사망사고	중징계	해임 - 파면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운전 · 물적피해 교통사고 · 도주 ⑤	중징계	정직 - 해임	경중징계	감봉 - 해임
음주운전 · 인적피해 교통사고 · 도주	중징계	해임 - 파면	중징계	강등 - 파면
음주측정 불응 ⑥	중징계	정직 - 강등	경중징계	감봉 - 강등

- ①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에 따른 자전거 등을 말한다.
- ② 음주운전 횟수 산정 적용시점은 "2009. 04. 22. 이후"로 하며,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포함됨. "자전거등"에서의 2회, 3회이상 적용은 "자전거등"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횟수만 산정한다.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유형	현행	개정	유형	현행	개정
2회			3회		
1회+ 1회	해임-파면	해임-파면		-	강등-해임
2회		정직			

- ③ "음주운전등 관련"이란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및 기타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위를 말함.
- ④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함.
- ⑤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 ⑥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함.
- 기준 적용: 자동차는 "2021. 3. 1.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자전거등은 "2024. 12. 11.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